

비관세장벽 모니터링(일본/도쿄지사)

I |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 [2022.5월]

1. 일본 식품첨가물의 미사용 표시관련 가이드라인 시행

- 일본 소비자청은 “식품첨가물의 미사용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”을 2022년 3월 30일자로 공표함
- 본 가이드라인 시행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표시가 소비자에게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식품첨가물의 미사용 표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님
- 본 가이드라인은 2024년 3월말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설정되었으며, 2년에 다다르지 않더라도 가능한 신속히 재검토 조치를 하도록 권고함

2. 상세 내용

- 적용범위 : 일반가공식품의 용기포장에 대하여 적용됨
- 주의가 필요시 되는 식품첨가물 미사용 표시는 하기 10유형임
- 유형별 내용
 - 유형1 : 단순히 「무첨가」라고 하는 표시. 단순히 무첨가라고 기재한 것 중에 무첨가 대상이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불명확한 표시로 오인될 수 있음
 - 유형2 : 식품표시기준에 근거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 표시
예) 인공감미료 미사용 등 무첨가 또는 미사용과 함께 인공, 합성, 화학, 천연등의 용어를 사용한 표시
 - 유형3 : 식품첨가물 사용을 법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식품에의 표시
예) 청량음료수에 솔빈산미사용으로 표시할 경우, 청량음료수에 대해서는 솔빈산 사용은 애초부터 사용기준 위반임
 - 유형4 : 동일기능, 유사기능을 가지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식품에의 표시

- 예) 상미기간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보존료 이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식품에 “보존료 미사용”으로 표시하는 경우 등
- 유형5 : 동일기능, 유사기능을 가지는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에의 표시
예) 원재료로서 아미노산을 함유하는 추출물을 사용한 식품에 첨가물로서의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표시
 - 유형6 : 건강, 안전과 관련시키는 표시
예) 몸에 좋다는 이유로서 무첨가 또는 미사용이라는 표시
 - 유형7 : 건강, 안전이외와 관련시키는 표시
예) 맛있다는 이유로서 무첨가 또는 미사용이라는 표시
 - 유형8 :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예기되지 않는 식품에의 표시
예) 동종의 제품에서 일반적으로 착색료가 사용되지 않고 더욱이 식품원래의 색을 발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“착색료 미사용”이라고 표시하는 행위
 - 유형9 : 가공조제, 캐리오버로서 사용되어지는 (또는 사용되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 되지 않는 것) 식품에 대한 표시
예) 원재료의 일부에 보존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제품에 “보존료 미사용”이라고 표시하는 행위
 - 유형10 : 과도하게 강조된 표시
예) 상품의 많은 부분에 과장되게 눈에 띄는 색상을 사용하여 **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는 행위

※ 자료원: 일본 소비자청

https://www.caa.go.jp/policies/policy/food_labeling/food_labeling_act/assets/food_labeling_cms201_220330_25.pdf

3. 시사점

- 일본 소비자청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오인할 수 있는 “무첨가”, “첨가물 0” 등의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식품업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으므로 대일 수출시 패키지 디자인에 해당 내용을 재검토하

여 대일 수출시 문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시 됨

II

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

1. 신선 참외의 모니터링 검사 강화 해제

- 일본 후생노동성 검역소는 한국산 대일 수출참외에 대해 그동안 잔류농약 검사강화(모니터링 검사 30%) 해 왔던 아래 농약성분에 대해 일정기간 무위반 실적을 인정하여 통상 검사 체재로 환원됨
 - 품목명 : 한국산 참외(신선)
 - 해제농약성분 : 프리사이미돈
 - 해제일 : 2022.6.21
 - 해제이유 : 2021.6.18부터 모니터링 검사 강화(수입건수의 30% 검사) 이후 그동안 해당 농약성분에 대한 위반실적이 없기에 검사 강화 해제함
- * 모니터링 검사는 통상 1년간 무위반시 해제 요건에 해당됨

※ 자료원 :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

<https://www.mhlw.go.jp/content/11135200/000954020.pdf>

2. 시사점

- 한국산 참외는 최근 한류붐 등으로 인해 일본 유통업체에서도 조금씩 취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로 대일 수출업체의 경우 안전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농약관리 사전 검사 등을 통해 주의가 필요시 됨

III

통관문제사례 관련(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)

1.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

-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

-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2.5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모두 51건이 발생함(식기류 제외)
- 5월의 한국산 식품 위반사례는 컵떡볶이에서 기준치 이상의 산가 검출, 디카페인 커피 원두에서 사용기준부적격의 산화 에틸 사용, 레토르트 비빔면에서 폴리소르베이트가 기준 이상 검출 등 첨가물 위반으로 계 3건의 위반이 발생함
- 각국에서 수입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잔류농약 및 항균제 등 위반사례가 10건(19.6%), 아플라톡신 위반이 9건(17.6%), 대장균군 양성 및 세균수 기준치 초과 등 위생위반이 15건(29.4%), 첨가물 위반이 17건(33.3%) 으로 나타나 첨가물 위반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함

2.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

○ 미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5월의 미국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12건으로 세계 각 수입국가중 위반건수가 제일 높았으며,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위반율 중 23.5%를 차지함
- 생 아몬드에서 아플라톡신 위반 3건, 밀에서 곰팡이 발생 등 위생위반 3건, 아이싱 시럽 6컬러에서 첨가물 위반 6건 등 계 12건의 위반이 발생함

○ 베트남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냉동야채와 두유에서 대장균군 양성으로 위생 위반 2건, 조미료와 즉석 면류 에서 첨가물 위반 3건 등 계 5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

○ 중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건조 흑마늘과 냉동 생선 세균수 부적격 등 위생 위반 2건, 냉동 브로콜리와 녹두에서 잔류 농약 위반 사례 2건 등 계 4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

○ 멕시코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신선 망고에서 4건의 잔류 농약 위반사례가 발생함

○ 호주 수입식품 위반 사례

- 멧쌀에서 곰팡이 등 위생 위반 1건, 신선 포도에서 이산화황 초과 검출 등 2건의 잔류 농약 위반 등 계 3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

<표1>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

국가명	위반건수	위반율	잔류농약 및 항균제등	아플라톡 신	위생	첨가물	기타
미국	12	23.5		3	3	6	0
베트남	5	9.8			2	3	0
멕시코	4	7.8	4				0
중국	4	7.8	2		2		0
인도네시아	3	5.9			3		0
호주	3	5.9			1	2	0
방글라데시	3	5.9	3				0
브라질	3	5.9		2		1	0
한국	3	5.9			1	2	0
기타	11	21.6	1	4	3	3	0
합 계	51	100.0	10	9	15	17	0
비율(%)			19.6	17.6	29.4	33.3	0.0

<표2> 국가별 식품 위반 내역 상세



※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